

양해각서

마인크래프트: 교육용 에디션을 활용한 SW 교육 협력 프로젝트

본 양해각서는 2018년 4월 13일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서울교육대학교(이하 “서울교대”)와 서울 종로구 종로 1길 50 더케이타워 A동 12층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(이하 “마이크로소프트”)간에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양해각서는 서울교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인크래프트: 교육용 에디션을 활용한 SW 선도 교육 협력 프로젝트 관련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협력범위 및 내용)

서울교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각 항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한다.

- ① 마인크래프트: 교육용 에디션 등 교육용 플랫폼을 활용한 SW 선도 교육
- ② 오피스365 등 클라우드 환경 조성 및 해당 서비스를 활용한 커리큘럼 개발
- ③ Microsoft Showcase School(SCS)과 Microsoft Innovative Educator Expert (MIEE)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 안내
- ④ 기타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분야. 구체적인 상호 협력 내용 및 절차는 사안별로 서울교대와 마이크로소프트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.

제 3 조 (비밀유지)

- ① 모든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의 체결 사실, 양해각서에서 요구하는 활동의 수행 과정 및 수행을 통한 결과물 등과 관련하여 지득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 비밀 및 기밀 정보를 본 양해각서 상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,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상대방의 요구가 있는 경우, 당사자들은 상기 기밀 정보를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.
- ③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효력을 갖는다.

제 4 조 (유효기간)

본 양해각서는 서울교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,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, 모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1년 후 진행 경과를 확인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5 조 (양해각서의 효력)

본 양해각서는 제 3 조(비밀유지)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당사자들을 구속하지 아니한다.

제 6 조 (부패방지)

- ① 당사자들은 어떠한 정부 기타 공공단체 또는 기업(이들이 지분을 소유하는 단체 또는 기업을 포함한다),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, 공직후보자 기타 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” 적용 대상자에게 이들의 행위 또는 결정에 대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, 기타 본 양해각서의 협력 내용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방법으로 도모하기 위하여, 직, 간접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이익도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지 아니한다.
- ② 서울교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(Foreign Corrupt Practice Act) 및 대한민국 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” 을 포함하여 부패방지와 관련하여본 양해각서에 적용 가능한 제반 법령을 준수 할 것이다.
- ③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효력을 갖는다.

제 7 조 (준거법 및 분쟁해결)

- ① 본 양해각서와 관련된 제반 문제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해석되고 규율 된다.
- ② 본 양해각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의 상호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기로 한다.

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든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를 2부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,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4월 13일

서울교육대학교

김 경 성

총장 김 경 성

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

대표이사 고알프레드순동